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구단10459 주민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redacted]은행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8. 23.

판 결 선 고 2018.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7.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7.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 2. 기재 각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으로 [redacted]구 [redacted] 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2

재 건물을 소유하고 그 건물 1층에 [redacted]은행 [redacted]지점, 2층에 [redacted]은행 [redacted] 지역본부와 [redacted]사업본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5. 20.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5. 7. 14. 위 [redacted]지점, [redacted]지역본부, [redacted]사업본부를 하나의 단일한 사업소로 보아 별지 1.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각 종업원분 주민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31. 종업원 주민세 합계 105,271,5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8. 조세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2.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4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종업원 수를 계산함에 있어 원고의 급여대장만으로 종업원 수를 판단하여 ① 육아 휴직자, 정년 대기자, 인병 휴가자(이하 '육아 휴직자 등'이라고 한다)와 ② 타 사업소 주재근무자, 직원아파트 합숙소 취사담당자(이하 '타 사업소 근무자'라고 한다)까지 종업원 수에 포함하여 각 종업원분 주민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육아 휴직자 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redacted]지역본부에서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redacted]지역본부의 인적설비에 해당하지 않고(육아휴직 등 발령 당시 근무한 사업소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② 타 사업소 근무자는 [redacted]지역본부가 아니라 타 사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므로 [redacted]지역본부의 종업원이 아닌 타 사업소의 종업원인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2

급여대장의 종업원 수에서 육아휴직자 수 및 타 사업소 근로자를 제외하여야 하는데, 그 방식에 따라 원고의 종업원 수를 산정하면 면제점 이하, 즉 50명 이하가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주민세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4호는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는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8조의3 제1항은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업원이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으면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그 사업소 소속 종업원이 되는 것이고,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이 된다고 해석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2

2)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① 원고는 시행령 제78조의3 제2항이 현역복무 등으로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아니 할 때에도 종업원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규정한 이유는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아니하기 전에 그 사업소에서 혹은 그 사업소와 관련하여 근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사업소에서 혹은 그 사업소와 관련하여 근무하던 중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소의 종업원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고, 오히려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위 시행령 조항에 비추어 휴직자 등도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redacted]지역본부 종업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예컨대 휴직기간이 끝나고 복직하는 휴직자의 경우처럼 정기인사발령일까지 [redacted]지역본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인력관리를 하지만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를 '주재근무자'라고 하면서 이러한 '주재근무자'는 [redacted]지역본부에 소속만 되어 있지 다른 사업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redacted]지역본부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주재근무자'는 원고의 일시적 유휴인력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redacted]지역본부에서 급여를 받는 등 인력관리를 받으면서 새로운 인사명령이 발령되기 전까지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근무자를 [redacted]지역본부의 종업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③ 원고는 직원합숙소의 취사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합숙소에서 실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redacted]지역본부 종업원 수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직원합숙소는 주거 공간일 뿐 사업소, 즉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급여를 지급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2

는 등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redacted]지역본부의 종업원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유아휴직자 등은 [redacted]지역본부 소속으로 발령을 받고 [redacted]지역본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redacted]지역본부의 종업원에 해당하므로 [redacted]지역지역본부의 종업원의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는 하나의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인 [redacted]지점, [redacted]지역본부, [redacted]사업본부를 하나의 단일한 사업소로 보아 각 종업원분 주민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redacted]지점과 [redacted]지역본부, [redacted]사업본부(이하 '[redacted]본부등'이라고 한다)는 고객층이 서로 겹치지 않고 업무의 내용이 서로 달라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② [redacted]지점과 [redacted]본부등은 사업장 별로 분사무소 등기를 하였는바 법률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redacted]지점과 [redacted]본부등은 사업자등록을 별개로 하여 각각 별개의 과세 주체로 인식되는 점, ④ [redacted]지점과 [redacted]본부등은 예산이 독립적으로 나뉘어 있고 결산 및 회계처리를 각각 하는 점, ⑤ [redacted]지점과 [redacted]본부등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외부에서 쉽게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redacted]점과 [redacted]본부 등이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2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75조 제3항,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2

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의무가 면제되는데,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한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0188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535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redacted]지점이, 2층은 [redacted]본부 등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각 사업장은 임차료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고, 원고의 사업운영상 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redacted]본부는 [redacted]지점을 관리·감독하는 상부조직이다.

② [redacted]지점과 [redacted]본부등은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별개로 하고 있는 사실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2

인정되나, 등기는 일정한 사항을 널리 공중에게 공시하기 위하여 공개된 공부에 기재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의 경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 개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묶어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도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등기가 되었다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고 하여 별개의 사업소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redacted]지점과 [redacted]본부등은 별개로 예산이 배정되고, 회계처리도 달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각 조직별 예산 배정과 회계처리는 각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결산은 원고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각 조직은 자기 부서에 할당된 예산을 사후 정산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조직별로 결산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3)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종업원분 주민세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의 성격을 갖는 점 등을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광산지점과 호남지역본부등이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개의 사업소라고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효율적 업무관리를 하기 위하여 조직을 기능별로 구분한 것으로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2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2

[별지1 부과처분내역]

귀속연월	본세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종업원 수 (A+B+C)
2010년 9월	1,124,070	224,810	574,280	1,923,160	52
2010년 10월	1,203,710	240,740	604,140	2,048,590	54
2010년 11월	1,181,920	236,380	582,560	2,000,860	53
2010년 12월	1,108,880	221,770	536,250	1,866,900	55
2011년 1월	1,124,140	224,820	533,170	1,882,130	56
2011년 2월	1,124,610	224,920	523,950	1,873,480	53
2011년 3월	599,910	119,980	273,730	993,620	53
2011년 4월	1,141,660	228,330	510,660	1,880,650	54
2011년 5월	1,059,060	211,810	464,180	1,735,050	55
2011년 6월	2,503,990	500,790	1,074,210	4,078,990	56
2011년 7월	662,030	132,400	278,050	1,072,480	55
2011년 8월	743,350	148,670	304,400	1,196,420	53
2011년 9월	1,008,180	201,630	404,980	1,614,790	51
2011년 10월	1,143,620	228,720	448,750	1,821,090	51
2011년 11월				0	50
2011년 12월	995,950	199,190	372,580	1,567,720	53
2012년 1월	1,093,830	218,760	399,020	1,711,610	60
2012년 2월	1,222,380	244,470	434,550	1,901,400	53
2012년 3월	614,880	122,970	213,240	951,090	54
2012년 4월	1,221,080	244,210	412,480	1,877,770	52
2012년 5월	1,198,370	239,670	393,300	1,831,340	56
2012년 6월	2,726,510	545,300	871,110	4,142,920	60
2012년 7월	736,240	147,240	228,380	1,111,860	64
2012년 8월	797,640	159,520	240,000	1,197,160	63
2012년 9월	1,199,240	239,840	350,050	1,789,130	62
2012년 10월	1,344,640	268,920	379,180	1,992,740	60
2012년 11월	1,131,770	226,350	309,650	1,667,770	61
2012년 12월	1,125,450	225,090	297,450	1,647,990	64
2013년 1월	1,343,190	268,630	341,700	1,953,520	78
2013년 2월	1,500,520	300,100	369,570	2,170,190	72
2013년 3월	807,320	161,460	191,570	1,160,350	71
2013년 4월	1,604,990	320,990	366,410	2,292,390	69
2013년 5월	1,384,840	276,960	303,270	1,965,070	68
2013년 6월	2,721,200	544,240	571,450	3,836,890	74
2013년 7월	921,050	184,210	184,300	1,289,560	7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2

2013년 8월	1,018,930	203,780	195,020	1,417,730	77
2013년 9월	1,558,890	311,770	284,340	2,155,000	78
2013년 10월	1,702,340	340,460	294,160	2,336,960	75
2013년 11월	1,540,290	308,050	252,760	2,101,100	74
2013년 12월	1,446,140	289,220	223,860	1,959,220	83
2014년 1월	1,507,040	301,400	219,270	2,027,710	80
2014년 2월	1,675,110	335,020	229,650	2,239,780	75
2014년 3월	851,680	170,330	108,840	1,130,850	71
2014년 4월	1,514,360	302,870	178,990	1,996,220	67
2014년 5월	1,438,930	287,780	157,560	1,884,270	69
2014년 6월	3,158,100	631,620	317,380	4,107,100	79
2014년 7월	980,750	196,150	89,150	1,266,050	76
2014년 8월	1,056,890	211,370	86,240	1,354,500	76
2014년 9월	1,572,250	314,450	114,610	2,001,310	75
2014년 10월	1,761,470	352,290	112,020	2,225,780	68
2014년 11월	1,569,620	313,920	85,700	1,969,240	69
2014년 12월	1,492,300	298,460	66,700	1,857,460	86
2015년 1월	1,543,670	308,730	55,570	1,907,970	75
2015년 2월	1,743,830	348,760	48,120	2,140,710	68
2015년 3월	878,020	175,600	16,060	1,069,680	62
2015년 4월	1,717,280	343,450	15,450	2,076,180	60
합 계	73,148,110	14,629,370	17,494,020	105,271,500	

* 종업원 수 계산

A: [redacted]지점 종업원 수, B: [redacted]지역본부 종업원 수, C: [redacted]사업본부 종업원 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2

[별지2 부과처분내역]

귀속연월	본세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종업원 수 (B+C')
2012년 7월	536,410	107,280	166,390	810,080	51
2012년 12월	779,930	155,980	206,130	1,142,040	51
2013년 1월	969,440	193,880	247,200	1,410,520	63
2013년 2월	1,059,190	211,830	261,190	1,532,210	59
2013년 3월	595,700	119,140	141,360	856,200	58
2013년 4월	1,137,920	227,580	259,780	1,625,280	56
2013년 5월	999,980	199,990	218,990	1,418,960	55
2013년 6월	1,968,260	393,650	413,330	2,775,240	61
2013년 7월	707,360	141,470	141,960	990,790	63
2013년 8월	748,410	149,680	143,240	1,041,330	64
2013년 9월	1,176,950	235,390	214,670	1,627,010	65
2013년 10월	1,252,000	250,400	216,720	1,719,120	62
2013년 11월	1,146,660	229,330	188,160	1,564,150	61
2013년 12월	1,084,070	216,810	167,810	1,468,690	70
2014년 1월	1,129,840	225,960	164,390	1,520,190	66
2014년 2월	1,232,730	246,540	169,000	1,648,270	62
2014년 3월	638,330	127,660	81,570	847,560	58
2014년 4월	1,063,700	212,740	126,360	1,402,800	54
2014년 5월	1,052,980	210,590	115,300	1,378,870	56
2014년 6월	2,406,000	481,200	241,800	3,129,000	66
2014년 7월	733,060	146,610	66,850	946,520	62
2014년 8월	761,740	152,340	62,380	976,460	62
2014년 9월	1,140,240	228,040	83,120	1,451,400	61
2014년 10월	1,241,470	248,290	78,950	1,568,710	54
2014년 11월	1,135,620	227,120	62,000	1,424,740	55
2014년 12월	1,080,680	216,130	48,950	1,345,760	72
2015년 1월	1,110,900	222,180	39,990	1,373,070	58
2015년 2월	1,228,460	245,690	33,900	1,508,050	54
합 계	30,118,030	6,023,500	4,361,490	40,503,020	